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不動産取引の申告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別紙第4号書式] <改正2020年2月27日> 不動産取引管理システム (rtms.molit.go.kr)
からも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不動産取引契約解除等届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裏面の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시 受付日時		처리기간 処理期間	
				지체없이 遅滞なく	
신고인 届出人	구분 区分				
	<div><div>[] 매도인 [] 売渡人</div><div><div>[] 매수인 [] 買受人</div><div>[] 개업공인중개사 [] 開業公認仲介士</div><div>[] 대리인 [] 代理人</div></div></div>				
	성명(법인명) 氏名 (法人名)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外国人登録番号)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소(법인소재지) 住所 (法人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신고 사항 届出 事項	매도인 売渡人	성명(법인명) 氏名 (法人名)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外国人登録番号)	
		주소(법인소재지) 住所 (法人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매수인 買受人	성명(법인명) 氏名 (法人名)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外国人登録番号)	
		주소(법인소재지) 住所 (法人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신고필증 관리번호 届出済証 管理番号						
계약 체결일 契約締結日	년 年	월 月	일 日	거래계약 해 제등의 사유 발생일 取引契約解除 等の理由が発 生した日	년 年	월 月 일 日
부동산 소재 지 不動産の 所在地						
거래계약 해 제등의 사유 取引契約解 除等の理由	구분 区分					
	[] 해제 [] 무효 [] 취소 [] 解除 [] 無効 [] 取消					
	사유 理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不動産取引の申告等に関する法律」第3条の2及び同法施行規則第4条第1項・第2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不動産取引契約解除等の内容を届け出ます。

년
年

월
月

일
日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売渡人 :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買受人 :

신고인
届出人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인)
開業公認仲介士 : (署名又は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開業公認仲介士が
仲介した場合)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div>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div> <div>1. 裁判所の判決文等解除等が確定している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不動産取引の申告等に関する法律」第3条の2第1項但し書き又は同条第2項但し書き及び同法施行規則第4条第2項に基づいて単独で不動産取引契約解除等の届出を行う場合のみ該当）</div> <div>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div> <div>2. 単独申告事由書（「不動産取引の申告等に関する法律」第3条の2第1項但し書き又は同条第2項但し書き及び同法施行規則第4条第2項に基づいて単独で不動産取引契約解除等の届出を行う場合のみ該当）</div>
--------------	--

유의사항
留意事項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取引契約の解除等が行われていないにも関わらず、虚偽の「不動産取引の申告等に関する法律」第3条の2に基づく解除等の届出を行った場合は、同法第28条第1項第2号に基づき 3千万ウォン以下の過料に処されるのでご注意ください。

작성방법
作成方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 届出人が売渡人又は買受人の場合、届出事項の売渡人又は買受人欄に重複して記入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2. 届出人は全ての取引当事者が届出内容を確認した上で署名又は捺印をするものとします。
3. 부동산 소재지는 동·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3. 不動産の所在地は、棟・号数等の詳細住所まで記入してください。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4. 多数の不動産、関連する筆地、売渡人・買受人、開業公認仲介士等、記載する内容が複雑な場合は、別の用紙に記入し、割印を押して添付してください。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届出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